

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(회계정리),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조(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),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(회계자료의 제출) 및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고시 제4조(부담금 산정자료의 제출)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하오니, 해당 사업자는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작성·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1) 영업보고서

가. 제출대상 : (주)케이티 등 2009년말 현재 143개 기간통신사업자

나. 제출자료 : 「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」의 별지 제1호 ~ 제18호 서식

※ 다만, 단일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, 연간 기간통신서비스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1호(대차대조표), 제2호(손익계산서) 및 제18호 서식(영업보고서 경영자확인서) 자료만 제출할 수 있음

다. 제출기한 : 2010년 3월 31일(수)까지

라. 제출방법 및 안내

- 제출방법 : 방송통신위원회 회계정보분석시스템(<http://fias.kcc.go.kr>)을 통한 온라인 제출 (※ 회계정보분석시스템 온라인 제출방법은 붙임 「회계정보 입력 가이드」 참고)
- 문의
 - 회계정리 제도에 관한 사항: 담당 박지숙(02-750-2663)
 - 회계정보 분석시스템 입력에 관한 기술 사항 : 담당 이정재(02-750-2668)

마. 기타

- 방송통신위원회 회계정보분석시스템은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, 반드시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의 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시 대표이사과 영업보고서 담당이사의 확인·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므로, 영업보고서 제18호 서식(경영자확인서) 작성후, 그림파일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(붙임 참조).

(2)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

가. 제출대상 : (주)케이티

나. 제출자료 :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

다. 제출기한 : 2010년 3월 31일(수) 까지

라. 제출방법 : 등기우편(공문포함) 및 전자우편(엑셀파일) 제출

마. 제출처 및 안내

○ 주소 : (110-777)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

○ 문의 및 전자우편 : 담당 박지숙(02-750-2663, parkjs@kcc.go.kr)

(3)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분담 및 연구개발부담금 산정 관련자료

가. 제출대상 : 전기통신사업매출액 300억원 이상 사업자

나. 제출자료

○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분담 관련 : 보편적역무손실 분담 관련 회계자료

○ 연구개발부담금 산정 관련 : 「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고시」의 별표 자료

다. 제출기한, 제출방법, 제출처 및 안내 : (2)와 동일

붙임 : 회계정보 입력 가이드. 끝.